2014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4년 7월 24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조 정 환 거시건전성분석국장 윤 면 식 통화정책국장

박 이 락 금융결제국장 김 민 호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실장

허 진 호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5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제64조에 의거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내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련 대출취급실적을 동 프로그램의 한도배정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또한 담당부서는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차례 위원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안건에서 보고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26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6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 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행 한도는 2013년 12월에 결정된 것으로서 총한도 12조원내에서 프로그램별로는 무역금융지원 1조 5,000억원, 신용대출지원 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5,000억원, 기술형창업지원 3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4조 9,000억원, 한도보유분 1,000억원 등으로 정하였음을 설명하였음

이어서 관련부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문별로는 수출이 계속 호조이나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더디어 소비및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경로 상에도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관련 경기부진 업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어서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자금흐름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였음.

일부 위원은 당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정부 또는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차별화 할 필요가 있고, 당행 자금지원에 따른 금리감면 효 과도 중요하지만 신규대출 창출효과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선별적인 신용배분 성격을 감안할때 지원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방안은 경기대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은행의 경우 저리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설비투자 지원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고, 동 제도의 지원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실질적인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규대출로 한정할 예정이며, 이번 지원방안의대외 발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대응적 성격, 한시적 지원방침, 저리 장기자금의 인센티브 등 제도의 취지 및 특징을 강조하겠으며, 아울러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과정에서 지원효과를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은행간 경쟁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위원협의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총한도를 현행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그와 같이 증액하며, 프로그램별로는 한도 3조원의 설비투자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는 1조원 증액한 5조9,000억원으로, 신용대출지원 한도는 1조원 감액한 1조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여타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보유분은 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과거 정책금융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총액한도대출에서 변형·발전된 것이므로 앞으로 당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필요가 있으며, 보도자료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동 한도 증액의 필요성과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1조원 증액분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한과 유형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전략지원 부문과 일반지원 부문 외에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지방 경기부진업종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문을 만들어 9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답 변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현재의 12.0조원에서 3조원 증액하여 15.0조원으로 정하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3조원으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1조원 증액한 5.9조원으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1조원 감액한 1.0조원으로 각각 정한다.

여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의안 제27호 - 「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제7호·제8호,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81조의2에 의거 원활한 유동성 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며, 공개시장조작 관련 규정의 통일된 규정체계 정립을위해 「통화안정계정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내용을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또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7월 21일 위원협의회에서 이미 보고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28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조작규정」제2조 제2항에 의거 향후 1년간 당행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 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일중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시 이용실적이 없더라도 제도도 입의 목적인 결제조기화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선정에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용실적 기준은 당행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결제원활화 요건에 결제조기화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 RP 지원이 대상기관에 대한 선별적인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중 RP제도는 증권 결제의 조기화를 위한 당행의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일중 RP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얻는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일중 RP 매매방식으로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에서 대상기관을 제한된 범위로 국한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원활화를 위해 대부분

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게 담보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일중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일중 RP 제도가 당행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상기관 선정요건 개선 등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생략)